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59

발의연월일 : 2014. 12. 26.

발 의 자 : 이석현・이인영・안규백 박광온・이윤석・부좌현 배재정・송호창・장하나 한명숙・유은혜・은수미 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고용시장상황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시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관련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장년고용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게 된 것처럼,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현할 연간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에 이 내용을 반영되고 있지 않아 평가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법률 제 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할 때에는"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로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 4. (생 략)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다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④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